

<p>金勝建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.</p> <p>○金勝建委員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.</p> <p>저희 財務經濟委員會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 도 제가 지금 疑問視하는 것과 같이 나왔 는데, “地方自治法 第5章 地方議會 關聯規定 인 第82條와 第83條에 의거 設置된 議會事 務處 機構와 定員은 地方自治法 下位法令인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等에 關한 規程 등에 插入한 것은 다소 疑問의 餘地가 있 다.” 이렇게 말씀해 놓았거든요. 그런데 企劃 管理室에서, 執行部에서 보기엔 아무런 法 節次上의 問題가 없습니까? 없다면…….</p> <p>○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, 저희들로서는 전 혀 問題가 없고요, 왜냐하면 그 總數만 總 括 管理하기 위해서 規定하는 것이고, 이 전체 條例는 그냥 두는 것이고…….</p> <p>○金勝建委員 글쎄, 法的인 問題가 없다면 저는 좋습니다.</p> <p>○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, 그렇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文錫珍 다른 質疑事項 없으십니까? (「제가 한 가지 물겠는데요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李廷義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.</p> <p>○李廷義委員 5名의 行政職 2級 3名과 3級 1名은 96年 6月 30일까지, 行政職 2級 1名 은 96年 12月 31일까지 個人別 停年을 期 限하는 限時的 定員의 增員이라고 했습니다. 遊休人力을 管理하는 次元에서 지금 하는 것 입니까, 현재?</p> <p>○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네, 아까 提案說明에 서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自治團體長 選舉로 해서 既存 區廳長의 人力이 좀 남아 돌아가 게 됐습니다. 이것은 저희 서울市뿐 아니고 全國의 현상으로써 內務部에서도 이렇게 定 員의 管理로 全國의으로 전부 政策補佐官制를 活用을 해서 公務員의 停年을 保障해 주기 위한 措置입니다. 그러니까 그 定員 자체도 限時로 그 사람 停年까지만 정했습니다. 그 점을 理解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文錫珍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없 으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이상으로 議事日程 第2項에 대한 質疑 答 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方公務</p>	<p>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 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2 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의 본청, 의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청 : 2,069명 2. 의회사무처 : 162명 3. 직속 기관 : 5,108명 4. 사업소 : 9,852명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.</p> <p>②(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제1호의 증원 정원중 5명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 인별 한시정원으로, 행정2급 3명·행정3급 1명 은 1996년 6월 30일까지, 행정2급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 다.</p> <p>③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〈별표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정원표의 일반직 8급란 다음에 9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일반직 소계란 “76”을 “79”로 하 며, 총계란 “159”를 “162”로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9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3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지방행정서기보 3</td> </tr> </table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文錫珍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 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 습니다.</p> <p>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 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質疑하실 委員 있으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	9	3	지방행정서기보 3
9	3	지방행정서기보 3		